

【 주간이슈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으로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수행을 전면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근퇴법 개정안 31조)
 - 이에 보험설계사 등은 소비자(기업 또는 개인)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퇴직연금계약을 중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소규모 가입기업의 퇴직연금 이해도가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
 - 보험설계사의 업무영역 범위가 기존 개인영업에서 법인영업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영업의 시너지 제고가 예상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대면교육은 퇴직연금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가입을 유도하고 중간정산자, 이직자 등의 은퇴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는데 영향을 주어 개인형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것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허용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전적 대비가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법규준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전문 퇴직연금설계사 제도의 자체적인 운용이 요구됨.
 - 더불어 재무설계서비스체계(투자서비스+은퇴서비스)를 조기 구축하여 종합적인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유권해석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만 모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보험설계사 등 금융중개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모집업무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을 요구하기 이룸.
 - 실제로 보험설계사, 협회 등은 행정소송, 질의요청,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판매를 요청함.
 -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전문적 지식구비 없이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판매하는 경우 펀드 등의 사례와 같이 허위정보에 의한 불완전 판매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국회에 상정중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설계사 등에 대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수행을 전면 허용하되, 일정한 모집인 요건, 위탁범위 등을 규정하여 영업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이와 같은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은 퇴직연금의 판매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저변확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고는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허용 내용, 위탁제도 도입시 미치는 제반 영향 등을 살펴본 후에 보험회사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음.

2. 근퇴법 개정안의 모집업무위탁 관련규정

- 퇴직연금 모집의 자격요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이수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요건 미달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모집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의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의 신청방법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퇴직연금 모집업무위탁 요건 신설 법령(안)

구 분	근퇴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안
모집업무 및 모집인 요건	<p>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기존법을 준치)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제00조(퇴직연금 모집인의 요건) ① 법제3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 장관이 정하는 퇴직연금 모집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고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3. 모집인 위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법제29조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모집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출 것 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보험계약에 의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나.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신탁계약에 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p> <p>②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의 신청방법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범위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가 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단순한 소개가 아닌 사용자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무로 퇴직연금 모집인의 역할범위가 확대됨.

<표 2>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범위 신설 법령(안)

구 분	근퇴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안
모집업무 범위	<신설>	<p>제00조(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범위) 법 제3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의 운용관리업무 및 법 제29조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무 2. 기타 퇴직연금 모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표 3> 퇴직연금 모집업무위탁시 준수사항 신설 법령(안)

구 분	근퇴법 개정안	동법 시행령안
모집업무 준수 사항	<p>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00조(퇴직연금 모집업인의 준수사항) 법제31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가입 시키지 말 것 2.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의 대리계약 체결 금지 3.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금지 4.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으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금지 5. 제3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에게 대출 등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금지 6.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7.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 등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모집업무 위탁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나. 모집업무 위탁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리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 다. 금전·증권 등을 수취하지 못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라.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바.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한 사항 8. 기타 가입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준수할 것

- 퇴직연금 모집인에게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행위,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용자 등으로부터 금전 수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용자 등의 금융상품 매매 권한 수탁금지, 둘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범위를 위탁받은 자는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퇴직연금 가입 예정자에게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시하거나 증표를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제반영향

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설계사 역할증대

- 현재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퇴직연금 모집인 보다 퇴직연금의 단순소개인 역할에 지나지 않아 운용관리업무로서의 상품소개, 퇴직연금제도 설명, 자산운용자문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 소개업무 역시 정부의 명시적인 허용아래 수행되기보다 금융감독원의 소개 규정에 기초하여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범위가 사업자와 기업 및 근로자간의 계약체결 중개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에 보험설계사의 역할¹⁾이 기대됨.
 - 또한 보험설계사의 업무영역 범위가 기존의 개인영업에서 법인영업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영업의 시너지 제고가 예상됨.
 - 현재 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50% 정도가 보험설계사 등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의 확대는 보험설계사중심의 마케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1) 보험연구원(2010)이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n=900)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퇴직연금 가입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겠다는 의향이 42.2%로 나타남.

나. 소비자의 퇴직연금제도 인식 확대

□ 2010년 노동부-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비율 및 인지수준이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 소규모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안다는 응답자의 22.5%만이 퇴직연금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 약 42%가 퇴직연금제도를 잘 이해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대기업과 소기업과의 퇴직연금제도 인지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표 4> 기업규모별 퇴직연금제도 인지여부

(단위: %)

구분	미가입 기업(n=400)		안다(n=315)	
	모른다	안다	약간 안다	잘 안다
소기업 (100인 미만)	25.6	74.4	77.5	22.5
중기업 (100~299인)	8.8	91.2	61.5	38.5
대기업 (300인 이상)	5.3	94.7	58.3	41.7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9년 기업의 퇴직연금제 인식 및 운영실태분석, 2010

주: 퇴직연금 미가입기업 대상

□ 또한 201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가입자 교육이 보다 요구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교육담당자가 소수의 기업들까지 가입자 교육을 하는 데에는 비용 및 조직상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임.
○ 이러한 점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대면교육 및 서비스 제공은 퇴직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퇴직연금가입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

무자 등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될 전망이다.

-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영업자 등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기회마저 없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소외계층에 해당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견고한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사 등 퇴직연금 모집인의 역할이 절대적임.

<표 5>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

구분	2011	2015	2020
시장규모	7조 6,932억	15조 2,607억	29조 5,970억
선호도	41.25%{=42.7%(자)+39.8%(근)/2}		
보험권M/S	3조 1,734억	6조 2,950억	12조 2,088억

주: 1) 신규가입자(기존근로자, 자영업자)만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됨
 2) 특수형태근로자, 특수직역연금수급자, 중간정산자, 이직자, 명예퇴자, 은퇴자 등 감안시, 시장의 성장성 증대예상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모집업무 위탁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중간정산자 등의 은퇴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는데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즉 보험설계사가 기존 영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및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중개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보다 강화될 것임.

4. 향후과제

□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법규준수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투자손실에 따른 소송리스크 대비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규준수의무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전문 퇴직연금설계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용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이 일반보험보다 가입 및 적립규모가 크고 노후소득보장적 성격을 지닌 은퇴자금이므로 일반보험과 차별화된 불완전 판매 방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특히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잠재 수요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에 초점을 맞춘 전문 퇴직연금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체계(투자서비스+은퇴서비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규모기업 및 자영업자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KiRi